1회용품 줄이기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

이 정보는 2026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은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정보를 국민의 생활중심으로 재분류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된 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데이터 정책에 따라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제공하는 생활법령은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있으며, 영리 목적의 이용을 포함하여 자유로운 활용이 보장됩니다. 이 경우 출처가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http://www.easylaw.go.kr)임을 명시해 주시고, 단순 인용이 아닌 영리목적의 이용이거나 자료의 상당 부분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법제처 법제정보담당관(044-200-6900)으로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제공하는 생활법령 중 제3자가 저작권을 갖는 저작물의 경우에는 원 저작자의 저작권 정책 및 「저작권법」에 따릅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위조 · 변조하거나 생활법령에 포함된 제3자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저작권법」 제136조부터 제138조까지)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회용품 줄이기]

『1회용품 줄이기』 콘텐츠에서는 1회용품의 사용억제무상제공금지와 1회용품 분리배출에 대한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 매장 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대규모점포, 매장 규모가 165제곱미터 이상인 슈퍼마켓, 도소매업, 목욕장업 및 체육시설 등에서는 1회용품의 사용이 억제되거나 무상제공이 금지됩니다.
1회용 비닐봉투, 1회용 플라스틱 컵용기 및 1회용 스티로품 등은 내용물을 비우고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해야 합니다.

1회용품 줄이기 1
1. 1회용품 함께 줄이기 4
1.1. 1회용품 줄이기의 이해 4
1.1.1. 1회용품의 개념 4
1.1.2. 1회용품 줄이기의 목적 및 캠페인 5
1.2. 1회용품 사용제한 업종 등 7
1.2.1. 사용제한 업종 7
1.2.2. 사용제한 업종 지도·점검 10
2. 업종별 제한된 1회용품 확인하기 12
2.1. 식품접객업 등 12
2.1.1. 식품접객업 등의 범위 12
2.1.2. 1회용품 사용억제 14
2.1.3. 1회용품 무상제공 금지 16
2.2. 대형마트 및 백화점 등 17
2.2.1. 대규모점포의 범위 17
2.2.2. 1회용품 사용억제 19
2.3. 도·소매업 21
2.3.1. 도·소매업의 범위 21
2.3.2. 1회용품 사용억제 22
2.3.3. 1회용품 무상제공 금지 22
2.4. 목욕탕, 숙박업 및 체육시설 등 24
2.4.1. 목욕탕, 숙박업 및 체육시설 등의 범위 24
2.4.2. 1회용품 사용억제 26
2.4.3. 1회용품 무상제공 금지 28
3. 1회용품 분리배출 방법 알아보기 29
3.1. 1회용품 분리배출 29
3.1.1. 재활용 가능한 1회용품의 분리배출 29
3.1.2. 1회용품의 분리배출 방법 29

1. 1회용품 함께 줄이기

1.1. 1회용품 줄이기의 이해

1.1.1. 1회용품의 개념

1회용품의 개념

"1회용품"이란?

▪ “1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다음의 제품을 말합니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별표 1, 「1회용품 사용규제관련 업무처리지침」 제2조 및 「1회용품 사용규제에서 제외되는 1회용 봉투·쇼핑백」).

- **1회용 컵·접시·용기**(1회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종이·합성수지·금속박 등의 재질로 제조된 것을 말함)

  ※ 다만, 설탕·커피·크림·케첩 등과 같이 포장된 상태로 생산된 제품을 그대로 제공하는 것과 컵·접시·용기의 형태가 아닌 종이·비닐 및 금속박지 싸개는 제외함

- **1회용 나무젓가락**(1회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나무 재질로 제조된 것을 말함)

  ※ 다만, 표면을 옻칠 등으로 가공처리 하여 반복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은 제외함

- **이쑤시개**

  ※ 다만, 전분으로 제조한 이쑤시개는 제외함

- **1회용 수저·포크·나이프**

- **1회용 광고선전물**(종이에 합성수지를 분사하여 종이표면에 막을 형성시키거나 합성수지필름을 붙인 광고전단지로서 신문·잡지 등에 삽입하는 것으로 고객배포용 광고전단지 및 카탈로그 등 단순광고 목적의 1회용 광고선전물을 말함)

  ※ 고객에게 제공하지 않고 영업장소에 부착하는 광고전단, 포스터, 스티커와 영업장내에서 사용하는 제품 소개용 카탈로그 등의 홍보물과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되어 고객에게 제공하는 선전물은 제외함

- **1회용 면도기·칫솔**(1회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제조된 것을 말함)

- **1회용 치약·샴푸·린스**(소형의 용기 등에 포장된 것으로서 1회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제조된 것을 말함)

- **1회용 봉투·쇼핑백**[1회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합성수지 또는 종이 재질에 단면 이상을 합성수지 등으로 도포(코팅)하거나 첩합(라미네이션)하여 제조된 것을 말함]

  ※ 다음에 해당하는 봉투·쇼핑백은 1회용품 사용제한 대상에서 제외함

  √ 종이재질의 봉투·쇼핑백(손잡이 부분만 종이 이외의 재질인 경우도 포함)

  √ B5규격(182mm×257mm) 또는 0.5ℓ(500㎤)이하의 비닐 봉투·쇼핑백

  √ 망사·박스 및 자루 형태로 제작된 봉투·쇼핑백

  √ 이불, 장판 등 대형물품을 담을 수 있도록 제작된 50ℓ이상의 봉투

  √ 액체류보안봉투

  √ 종이재질에 UV 코팅 이외의 방식으로 합성수지 등을 이용하여 단면 이하를 도포 또는 첩합하여 제조한 봉투 또는 쇼핑백(쇼핑백의 경우 외부 바닥면에 원지 종류, 표면처리 방식, 제조사명, 제조사 연락처 등을 명시한 경우를 말함)

- **1회용 응원용품**(체육관, 운동장, 종합체육시설 등에서 응원객, 관람객 등에게 제공하기 위한 1회용 막대풍선, 1회용 비닐방석 등을 말함)
- **1회용 비닐식탁보**(생분해성수지제품 제외)
- **1회용 빨대 및 1회용 젓는 막대**(합성수지 재질로 제조된 것으로 한정함)
- **1회용 우산 비닐**(우산을 싸는 합성수지 재질로 제조된 봉투 형태의 것)

1.1.2. 1회용품 줄이기의 목적 및 캠페인

1회용품의 사용현황 및 줄이기의 목적

1회용품 사용현황

▪ 우리나라 국민을 대상으로 한 1회용품 사용현황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다음과 같이 1회용 컵과 1회용 비닐봉투가 주로 사용하고 있는 1회용품으로 조사 되었습니다(출처: 기후에너지환경부, 『1회용품 제도개선 전문가 포럼 운영』, 22면 참조).

순번	1회용품의 종류	평균 사용 개수(단위/기간)
1	1회용컵(종이 및 플라스틱 등)	3.36개/주
2	1회용 비닐봉투	2.90개/주
3	1회용 나무젓가락·이쑤시개·포크 및 나이프 등	1.21개/주
4	1회용 면도기·칫솔·치약·샴푸 및 린스	0.86개/주
5	1회용 용기(종이 및 플라스틱 등)	0.81개/주
6	1회용 응원용품	0.27개/월

1회용품 줄이기의 목적

▪ 1회용품 중 플라스틱은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자연환경을 파괴·위협하고 있습니다(출처: 한국환경공단, 『세계 플라스틱 재활용의 전망과 동향』, 11면 참조).

- 극지방의 해빙 속에서 플라스틱 조각들이 발견되었으며, 바다에 버려진 플라스틱 쓰레기는 바다거북, 돌고래, 고래 등 해양생물을 죽게 만들고 산호초서식지 파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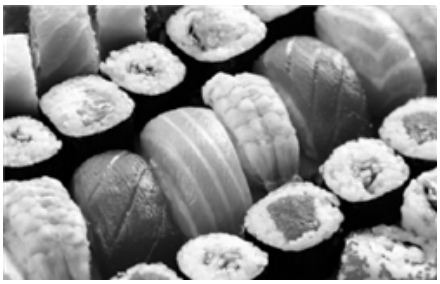

<플라스틱 비닐을 먹고 있는 거북>


<죽은 알바트로스의 배에서 나온 플라스틱>

- 직경 5mm 이하의 미세한 플라스틱 조각은 하수 처리 과정에서 걸러지지 않고 곧바로 강과 호수, 해양에 유입되어 조류와 물고기, 홍합, 동물성 플랑크톤 등이 이를 먹게 됨으로써 우리의 식탁을 위협



< 해안에 쌓여 있는 1회용품 쓰레기>



< 우리의 식탁에서 찾아 볼 수 있는 회 및 초밥 등 >

1회용품 줄이기 캠페인

1회용품 줄이기 위한 국민의 책무 및 에코라이프

- 모든 국민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 1회용품 사용을 자제하며, 폐기물이 적게 발생하는 제품 등을 우선 구매하여 내구연한(耐久年限)까지 최대한 사용하는 등 자원의 낭비를 억제하기 노력해야 합니다(「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7조제1항).

- 1회용품을 줄이기 위한 에코라이프 실천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출처: 기후에너지환경부 홈페이지-알림/홍보-카드뉴스 참조).

  - 1회용 컵 대신 개인컵 및 텀블러 사용
  - 화장실에서 종이타월대신 개인 손수건 사용
  - 쇼핑할 때에는 장바구니나 에코백 사용
  - 1회용 종이 용기 대신 도시락 사용

세계 1회용 비닐봉투 없는 날

- 매년 7월 3일은 세계 1회용 비닐봉투 없는 날입니다. 2008년 스페인의 국제환경단체 '가이아'가 제안해 만들어진 날로 매년 미국 및 프랑스 등 외국 시민단체가 동참합니다(출처: 기후에너지환경부 홈페이지-알림/홍보-카드뉴스 참조).

- 우리나라 1인당 1회용 비닐봉투 사용량은 다음과 같이 연간 410여개로 전체 1회용 비닐봉투 사용량은 연간 211억개입니다(출처: 기후에너지환경부 홈페이지-알림/홍보-카드뉴스 참조).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 캠페인

▪ 2018년 7월 1일부터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및 공공기관 등은 다음과 같이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시행하고 있습니다(출처: 기후에너지환경부 홈페이지-뉴스·공지-보도자료 '1회용품 사용 줄이기 공공기관이 앞장선다').

- 사무실 안에서 1회용 컵과 페트병의 사용을 금지하고, 회의·행사 시 다회용품을 적극 사용
- 야외 행사 시 병입수(페트병) 사용을 자제하고 음수대를 설치하여 개인 컵(텀블러) 등을 사용해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함
- 구매부서에서는 1회용품을 구매하지 않고 재활용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며, 1회용 우산 비닐 커버 대신 우산 빗물 제거기 설치를 권장함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자발적 협약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커피전문점 및 패스트푸드점의 1회용컵의 총 사용량이 지속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1회용 컵의 재질 단일화, 전면 유색 컵 사용 자제, 점검 결과의 언론공개 및 다회용컵 사용자에게 즉시 현금할인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1회용품 줄이기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출처: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백서 2024』, 468면).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18년 4월부터 대형유통업체와 '1회용 비닐쇼핑백·과대포장 없는 점포' 자발적협약을 체결하여, 매장 내에서 비치된 속비닐의 사용량을 50%이상 감축하고, 유색·코팅된 트레이의 무색 트레이로의 교체, 행사상품의 추가포장 자제 및 과대포장 제품의 입점 차단 등을 합의하였습니다(출처: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백서 2024』, 468면).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0년 5월에 배달·포장 시 불필요하게 제공되는 일회용 식기, 플라스틱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배달 플랫폼, 한국플라스틱포장용기협회, 한국프렌차이즈 협회 등과 배달·포장 요기의 규격화·감량화와 다회용기 사용 안내 및 1회용 식기 사용에 대해 소비자에 사전 선택권을 부여함으로써 1회용 플라스틱 사용량 감축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출처: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백서 2024』, 470면).

1.2. 1회용품 사용제한 업종 등

1.2.1. 사용제한 업종

1회용품의 사용제한 업종

1회용품의 사용억제 및 무상제공금지 업종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는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하지 않아야 합니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본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제2항,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제2항,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 및 「1회용품 사용규제관련 업무처리지침」 제3조).

1회용품 사용제한 업종	바로가기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다음에 해당하는 집단급식소 √ 기숙사 √ 학교, 유치원 및 어린이집 √ 병원 √ 사회복지시설 √ 산업체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 √ 그 밖의 후생기관 등	바로가기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다음에 해당하는 식품접객업 √ 휴게음식점영업 √ 일반음식점영업 √ 단란주점영업 √ 유흥주점영업 √ 위탁급식영업 √ 제과점영업	바로가기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식품 제조업·가공업 중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내에서 영업하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1호·제2호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 및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바로가기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숙박업(객실이 50실 이상인 경우로 한정함) 또는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의 목욕장업	바로가기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바로가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	바로가기
그 밖에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할 필요가 있는 다음의 시설 또는 업종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도매 및 소매업의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를 초과한 판매업소 ※ 다만, 시·군·구 조례에 따라 매장 면적 33제곱미터 미만인 도·소매업소에 대해서도 1회용 봉투·쇼핑백의 무상제공을 금지할 수 있음 √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 및 선물 중개업,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광고 대행업, 교육 서비스업 중 기타 교육기관, 영화관 운영업 및 공연시설 운영업	바로가기

1회용품 사용억제 및 무상제공금지의 예외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제1항 단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3항·제4항, 「1회용품 사용규제관련 업무처리지침」 제6조 및 「1회용품 사용규제에서 제외되는 1회용 봉투·쇼핑백」 제1조).

대상	내용
식품접객업 및 집단급식소	√ 집단급식소나 식품접객업소 외의 장소에서 소비할 목적으로 고객에게 음식물을 제공·판매·배달하는 경우 ※ 이 경우 전자상거래 또는 무인정보단말기를 통하여 음식물을 제공·판매·배달하는 때에는 고객이 1회용품 사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자동판매기를 통해 음식물을 판매하는 경우 √ 이쑤시개를 계산대 등 출입구에서만 제공하고 별도의 회수용기를 비치하여 사용하는 경우 √ 상례에 참석한 조문객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 ※ 다만, 식품접객업자가 상례에 참석한 조문객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음식물을 제공하는 장소와 같은 공간(사방이 벽으로 둘러싸여 다른 장소와 구분된 공간을 말하며, 내부를 볼 수 있도록 투명한 칸막이 등으로 구획된 공간은 같은 공간으로 봄)에 고정된 조리시설 및 세척시설이 모두 갖추어져 있는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음 √ 매장 외 사용 조건으로 제공한 1회용품을 고객의 변심으로 매장에서 사용하는 경우 √ 그 밖에 시장·군수·구청장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인정하는 경우
대규모점포 및 도·소매업	√ 종이재질의 봉투 및 쇼핑백, 생선·정육·채소 등 음식료품의 겉면에 수분이 있거나 냉장고 등에 보관하는 제품으로서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는 제품을 담기 위해 합성수지 봉투를 사용하는 경우 √ 도매 및 소매업으로서 매장 면적이 33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다만,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의 조례로 매장 면적 기준을 33제곱미터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해당 조례로 정한 면적 이하인 경우
대규모점포 내에서 영업하는 식품제조·가공업 및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밀봉포장을 하는 경우

공통사항	√ 사업자가 1회용품을 스스로 줄이기 위한 협약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체결하여 이행하는 경우 √ 1회용품 사용제한 대상에서 제외되는 다음의 봉투·쇼핑백 1. 종이재질의 봉투·쇼핑백(손잡이 부분만 종이 이외의 재질인 경우도 포함) 2. B5규격(182mm×257mm) 또는 0.5ℓ(500㎤)이하의 비닐 봉투·쇼핑백 3. 망사·박스 및 자루 형태로 제작된 봉투·쇼핑백 4. 이불, 장판 등 대형물품을 담을 수 있도록 제작된 50ℓ이상의 봉투 5. 액체류보안봉투 6. 종이재질에 UV 코팅 이외의 방식으로 합성수지 등을 이용하여 단면 이하를 도포 또는 첩합하여 제조한 봉투 또는 쇼핑백(쇼핑백의 경우 외부 바닥면에 원지 종류, 표면처리 방식, 제조사명, 제조사 연락처 등을 명시한 경우를 말함) √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1회용품의 사용량, 1회용품 사용의 불가피성 등을 고려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생분해성수지제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의 준수사항 중 무상제공금지 대상 1회용품에 해당하는 경우

※ 1회용품의 사용량, 1회용품 사용의 불가피성 등을 고려한 기준은 「1회용품 사용규제(무상제공금지 및 사용억제) 제외대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회용품의 사용제한 위반 시 제재

1회용품의 사용억제 및 무상제공금지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 1회용품 사용억제 및 무상제공금지 대상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업종을 경영하는 사람이 이를 위반하여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한 때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제2항제3호).

※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대한 세부사항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2.2. 사용제한 업종 지도·점검

1회용품 사용제한 준수여부 점검

1회용품 사용억제 및 무상제공금지 대상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

▪ 시장·군수·구청장은 1회용품 사용억제 및 무상제공금지 대상 사업장에 대해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지도·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1회용품 사용규제관련 업무처리지침」 제7조제1항 및 별지 제1호서식).

▪ 지도·점검은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으로 구분하여 실시해야 합니다(「1회용품 사용규제관련 업무처리지침」 제7조제2항).

> ※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의 점검횟수는 「1회용품 사용규제관련 업무처리지침」 별표 1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시장·군수·구청장은 대상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연간점검계획을 매년 1월 말까지 수립하여 시행해야 합니다(「1회용품 사용규제관련 업무처리지침」 제7조제3항·제4항).

- 대상 사업장 현황
- 전년도 점검실적, 이행실태 및 문제점
-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추진계획
- 중점 점검사항 등

▪ 시장·군수·구청장은 대상 사업장에 대한 효율적인 지도·점검 및 사후관리업무 추진 등을 위해 환경·위생·보건·산업 등 관계 부서 간 관련 자료를 공유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부서 간 합동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1회용품 사용규제관련 업무처리지침」 제7조제5항).

1회용품 사용억제 및 무상제공금지 준수여부 확인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주무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1회용품의 사용억제와 무상제공금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1회용품 사용 억제 및 무상제공금지대상 사업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전단·제2호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제2호).

▪ 이 경우 관계 공무원은 해당 시설·사업소 또는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장비 등을 검사 할 수 있습니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후단).

2. 업종별 제한된 1회용품 확인하기

2.1. 식품접객업 등

2.1.1. 식품접객업 등의 범위

1회용품의 사용이 제한되는 식품접객업 및 집단급식소

1회용품의 사용이 제한되는 식품접객업 또는 집단급식소의 범위

▪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하지 않아야 되는 식품접객업 또는 집단급식소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제2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2항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

▸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다음에 해당하는 식품접객업

대상	내용
휴게음식점	주로 다류(茶類),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않는 영업 ※ 다만, 편의점, 슈퍼마켓, 휴게소 및 그 밖에 음식류를 판매하는 장소(만화가게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하는 영업소 등 음식류를 부수적으로 판매하는 장소 포함)에서 컵라면, 일회용 다류 또는 그 밖의 음식류에 물을 부어 주는 경우는 제외함
일반음식점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단란주점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유흥주점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위탁급식영업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는 자와의 계약에 따라 그 집단급식소에서 음식류를 조리하여 제공하는 영업
제과점영업	주로 빵, 떡, 과자 등을 제조·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않는 영업

▸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다음에 해당하는 집단급식소

√ 기숙사

√ 학교, 유치원 및 어린이집

√ 병원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

√ 산업체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 그 밖의 후생기관 등

▹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식품 제조업·가공업 중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내에서 영업하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1호·제2호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 및 즉석판매제조·가공업

1회용품 사용제한 예외 대상

▪ 1회용품의 사용이 제한되는 식품접객업 또는 집단급식소에서 다음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3항·제4항제1호·제4호, 「1회용품 사용규제(무상제공금지 및 사용억제) 제외대상」 제1조제2항 및 「1회용품 사용규제관련 업무처리지침」 제6조제1호).

▹ 집단급식소나 식품접객업소 외의 장소에서 소비할 목적으로 고객에게 음식물을 제공·판매·배달하는 경우

※ 이 경우 전자상거래 또는 무인정보단말기를 통하여 음식물을 제공·판매·배달하는 때에는 고객이 1회용품 사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자동판매기를 통해 음식물을 판매하는 경우

▹ 상례에 참석한 조문객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

※ 다만, 식품접객업자가 상례에 참석한 조문객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음식물을 제공하는 장소와 같은 공간(사방이 벽으로 둘러싸여 다른 장소와 구분된 공간을 말하며, 내부를 볼 수 있도록 투명한 칸막이 등으로 구획된 공간은 같은 공간으로 봄)에 고정된 조리시설 및 세척시설이 모두 갖추어져 있는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음

▹ 이쑤시개를 계산대 등 출입구에서만 제공하고 별도의 회수용기를 비치하여 사용하는 경우

▹ 매장 외 사용 조건으로 제공한 1회용품을 고객의 변심으로 매장에서 사용하는 경우

▹ 해당 지역 시장·군수·구청장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인정하는 경우

▹ 사업자가 1회용품을 스스로 줄이기 위한 협약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체결하여 이행하는 경우·

▹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종합 소매업 및 제과점업), 1회용 빨대(식품접객업)가 생분해성수지제품인 경우

대규모점포 내에서 1회용품 사용이 제한되는 식품 제조·판매업 등

대규모점포 안에서 1회용품의 사용이 제한되는 식품제조업 등이란?

▪ "대규모점포"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매장을 보유한 점포의 집단을 말합니다(「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 및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3항).

▹ 하나 또는 건물 간의 가장 가까운 거리가 50미터 이내이고 소비자가 통행할 수 있는 지하도 또는 지상통로가 설치되어 있어 하나의 대규모점포로 기능할 수 있는 건물 안에 하나 또는 여러 개로 나누어 설치되는 매장일 것

▹ 상시 운영되는 매장일 것

▹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일 것

※ 매장면적 산정(算定) 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건물 내의 매장과 바로 접한 공유부분인 복도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복도의 면적을 포함함

> ※ 대규모점포의 종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유통산업발전법」 별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대규모점포 안에서 다음의 시설 또는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는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하지 않아야 합니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1호·제2호).

-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
-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 대상 식품을 제조·가공업소에서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

> ※ 즉석판매제조·가공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1.2. 1회용품 사용억제

커피전문점 및 음식점 등의 1회용품 사용억제

식품접객업 또는 집단급식소의 1회용 컵 및 용기 등 사용억제

▪ 식품접객업 또는 집단급식소에서는 다음에 해당하는 1회용품에 대해 사용을 억제해야 합니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별표 2 제1호가목부터 아목까지, 비고 제1호·제2호 및 「1회용품 사용규제관련 업무처리지침」 제4조제1호).

대상	예외
1회용 컵 (합성수지컵 및 금속박컵 등)	—
1회용 접시 (종이접시, 합성수지접시 및 금속박접시 등)	—
1회용 용기 (종이용기, 합성수지용기 및 금속박용기 등)	—
1회용 나무젓가락	식품접객업의 영업신고를 한 편의점 사업자가 즉석조리식품, 냉동식품 등의 음식물을 가열만 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음
1회용 이쑤시개	√ 전분으로 제조한 이쑤시개 √ 별도의 회수용기를 갖추고 계산대나 출입구에서만 제공하는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음
1회용 수저, 포크 및 나이프	—
1회용 비닐식탁보	생분해성수지 제품
1회용 광고물 및 선전물 (제작·배포 억제 등 사용억제)	—
1회용 플라스틱 빨대 및 젓는 막대	—

Q1. 손님이 남은 음식을 포장해 달라고 합니다. 1회용 용기를 사용할 수 있나요?

A1. 식품접객업소에서 주문 또는 남은 음식을 포장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Q2. 라면조리기는 영업면적 내에 두고 조리 후 외부에서 취식하는 방법으로 1회용 용기를 사용할 수 있나요?

A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집단급식소 또는 식품접객업으로 분류된 시설 또는 업종의 경우 1회용 용기를 사용하실 수 없기에 조리 용도로 사용되는 1회용 용기도 사용할 수 없으며, 영업면적 내에 라면조리기를 두고 취식을 외부에서 한다고 할지라도, 영업장 외부의 취식공간이 실제 영업공간으로 판단된다면 1회용 용기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출처: 기후에너지환경부 홈페이지>

제과점업의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사용억제

▪ 제과점업에서는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사용을 억제해야 합니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별표 2 제1호자목 비고).

1회용품의 사용억제 위반 시 제재

1회용품의 사용억제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 1회용품 사용억제 대상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업종을 경영하는 사람이 이를 위반하여 1회용품을 사용한 때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제2항제3호).

> ※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대한 세부사항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1.3. 1회용품 무상제공 금지

식품접객업의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무상제공 금지

무상제공 금지대상

▪ 식품접객업 중 음식점 및 주점업을 경영하는 사업자는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별표 2 제1호자목 본문).

> **Q. 1회용 봉투 유상제공 시 봉투가격을 가게 주인이 부담해도 되나요?**
>
> A. 무분별한 1회용 비닐봉투 사용에 따른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대규모점포 또는 도·소매업에서 1회용 봉투·쇼핑백의 경우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봉투 가격을 손님이 아닌 가게 주인이 부담하는 것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맞지 않는 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
> <출처: 기후에너지환경부 홈페이지>

▪ 다만, 다음에 해당될 때에는 음식점 및 주점업을 경영하는 사업자는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별표 2 제1호자목 본문 단서 및 「1회용품 사용규제에서 제외되는 1회용 봉투·쇼핑백」 제1조제2호·제3호).

- 종이재질의 봉투 및 쇼핑백
- 다른 제품에 묻을 우려가 있거나 가루가 발생하여 별도의 보관이 필요한 제품 또는 겉면에 수분이 있는 제품이나 냉장고 등에 보관하는 제품으로서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는 제품을 담기 위한 합성수지재질의 봉투
- 1회용품 사용제한 대상에서 제외되는 다음의 봉투·쇼핑백
  - √ B5규격(182mm×257mm) 또는 0.5ℓ(500㎤)이하의 비닐 봉투·쇼핑백
  - √ 망사·박스 및 자루 형태로 제작된 봉투·쇼핑백
  - √ 이불, 장판 등 대형물품을 담을 수 있도록 제작된 50ℓ 이상의 봉투
  - √ 액체류보안봉투
  - √ 종이재질에 UV 코팅 이외의 방식으로 합성수지 등을 이용하여 단면 이하를 도포 또는 첩합하여 제조한 봉투 또는

쇼핑백(쇼핑백의 경우 외부 바닥면에 원지 종류, 표면처리 방식, 제조사명, 제조사 연락처 등을 명시한 경우를 말함)

1회용품 무상제공금지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 1회용품 무상제공금지 대상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업종을 경영하는 사람이 이를 위반하여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한 때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제2항제3호).

> ※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대한 세부사항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회용품 봉투·쇼핑백 판매대금

1회용 봉투·쇼핑백 판매대금의 용도

▪ 1회용 봉투·쇼핑백을 판매한 사업자는 판매대금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의2 및 별표 2 비고 제3호).

- 고객이 사용한 1회용 봉투·쇼핑백을 되가져올 경우의 현금환불
- 고객이 장바구니를 이용할 경우의 현금할인 또는 사은품 제공
- 장바구니의 제작·보급
- 1회용품의 사용억제를 위한 홍보
- 전년도의 1회용 봉투·쇼핑백 판매금액보다 고객에게 환불 또는 현금 할인한 금액이 많은 경우 그에 대한 보전
- 그 밖에 환경보전을 위한 다음의 활동
  - √ 1회용 합성수지 재질 제품의 생분해성수지제품으로의 대체(代替)
  - √ 1회용 봉투·쇼핑백의 회수·재활용 촉진
  - √ 환경미화원의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원
  - √ 민간 환경단체의 환경보전 활동 지원

> **Q. 고객이 사용한 1회용 봉투를 되가져 올 경우 환불해 주지 않으면 벌금을 내야 하나요?**
>
> A.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서는 1회용 봉투를 판매한 사업자는 고객이 사용한 1회용 봉투를 되가져 올 경우 판매대금을 현금환불, 현금할인, 장바구니의 제작·보급 용도로 사용토록 권장하고 있으나, 매장으로 하여금 현금으로 환불해 줄 것을 강제하지는 않습니다.
>
> <출처: 기후에너지환경부 홈페이지>

2.2. 대형마트 및 백화점 등

2.2.1. 대규모점포의 범위

1회용품의 사용이 제한되는 대규모점포의 범위

"1회용품의 사용이 제한되는 대규모점포"란?

▪ “1회용품의 사용이 제한되는 대규모점포”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매장을 보유한 점포의 집단을 말합니다(「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 및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3항).

- 하나 또는 건물 간의 가장 가까운 거리가 50미터 이내이고 소비자가 통행할 수 있는 지하도 또는 지상통로가 설치되어 있어 하나의 대규모점포로 기능할 수 있는 건물 안에 하나 또는 여러 개로 나누어 설치되는 매장일 것
- 상시 운영되는 매장일 것
-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일 것

※ 매장면적 산정(算定) 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건물 내의 매장과 바로 접한 공유부분인 복도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복도의 면적 포함

대규모점포의 종류

▪ 대규모점포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유통산업발전법」 별표).

구분	내용
대형마트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식품·가전 및 생활용품을 중심으로 점원의 도움 없이 소비자에게 소매하는 점포의 집단
전문점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의류·가전 또는 가정용품 등 특정 품목에 특화한 점포의 집단
백화점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다양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현대적 판매시설과 소비자 편익시설이 설치된 점포로서 직영의 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인 점포의 집단
쇼핑센터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다수의 대규모점포 또는 소매점포와 각종 편의시설이 일체적으로 설치된 점포로서 직영 또는 임대의 형태로 운영되는 점포의 집단
복합쇼핑몰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쇼핑, 오락 및 업무 기능 등이 한 곳에 집적되고, 문화·관광 시설의 역할을 하며, 1개의 업체가 개발·관리 및 운영하는 점포의 집단
그 밖의 대규모점포	위에 해당하지 않는 점포의 집단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단 √ 용역의 제공장소를 포함하여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전체 매장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점포의 집단(다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매장면적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의 면적 비율을 조정할 수 있음)

2.2.2. 1회용품 사용억제

대규모점포의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등 사용억제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등 사용억제

▪ 대규모점포에서는 1회용 봉투, 쇼핑백 및 1회용 우산 비닐 사용을 억제해야 합니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4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제4호 가목 본문 및 나목).

▪ 대규모점포에서는 1회용 봉투, 쇼핑백 및 1회용 우산 비닐 사용이 억제되며, 다음의 포스터를 사용하여 고객이 알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출처: 기후에너지환경부 홈페이지-알림/홍보-홍보자료-자료관).



▪ 다만, 다음의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은 사용할 수 있습니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제4호 가목 단서 및 「1회용품 사용규제에서 제외되는 1회용 봉투·쇼핑백」).

▹ 종이재질의 봉투 및 쇼핑백

▹ 생선, 정육 및 채소 등 음식료품의 겉면에 수분이 있는 제품이나 냉장고 등에 보관하는 제품으로서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는 제품을 담기 위한 합성수지재질의 봉투

▹ 1회용품 사용제한 대상에서 제외되는 다음의 봉투·쇼핑백

√ B5규격(182mm×257mm) 또는 0.5ℓ(500㎤)이하의 비닐 봉투·쇼핑백

√ 망사·박스 및 자루 형태로 제작된 봉투·쇼핑백

√ 이불, 장판 등 대형물품을 담을 수 있도록 제작된 50ℓ 이상의 봉투

√ 액체류보안봉투

√ 종이재질에 UV 코팅 이외의 방식으로 합성수지 등을 이용하여 단면 이하를 도포 또는 첩합하여 제조한 봉투 또는 쇼핑백(쇼핑백의 경우 외부 바닥면에 원지 종류, 표면처리 방식, 제조사명, 제조사 연락처 등을 명시한 경우를 말함)

> **Q1. 대형마트에서 과일을 낱개로 판매할 때, 1회용 봉투를 사용할 수 있나요?**

A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생선 및 정육 등 수분이 있는 제품을 담기위한 봉투(속비닐)은 사용가능하며, 겉면에 수분이 없더라도 포장이 되지 않은 1차 식품(벌크로 판매하는 흙 묻은 채소 등)의 경우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1차 식품이 이미 포장되어 있는 경우 1회용 비닐(속비닐)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Q2. 대형마트 내에 있는 사진관을 운영 중인데 사진보호를 위해 사용하는 비닐봉투도 1회용 봉투에 해당되어 제공할 수 없나요?

A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B5규격 또는 0.5L 이하의 비닐 봉투 및 쇼핑백의 경우 사용이 가능합니다.

<출처: 기후에너지환경부 홈페이지>

대규모점포 내에서 식품제조 및 가공 등의 영업 시 1회용 합성수지용기 사용억제

▪ 대규모점포 안에서 식품제조·가공업 및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영업을 할 때에는 1회용 합성수지용기 사용을 억제해야 합니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별표 2 제2호 본문).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용기는 사용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별표 2 제2호 단서).

√ 밀봉포장용기

√ 생분해성수지용기

Q. 대형마트에 있는 음식점에서 고객이 외부에서 취식할 목적으로 포장 요청 시 1회용봉투를 제공할 수 있나요?

A. 대형마트에 입점한 매장은 업종별 규제사항과 함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대규모점포 준수사항 또한 준수해야 하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식품접객업소 외의 장소에서 소비할 목적으로 고객에게 음식물을 제공, 판매 및 배달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출처: 기후에너지환경부 홈페이지>

1회용 광고물 및 선전물 사용억제

▪ 대규모점포에서는 1회용 광고물 및 선전물의 제작·배포 등의 사용을 억제해야 합니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별표 2 제4호 다목).

1회용품 사용억제 위반 시 제재

1회용품 사용억제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 1회용품 사용억제 대상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업종을 경영하는 사람이 이를 위반하여 1회용품을 사용한 때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제2항제3호).

※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대한 세부사항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3. 도·소매업

2.3.1. 도·소매업의 범위

1회용품의 사용이 제한되는 도·소매업

1회용품 사용이 제한되는 도·소매업의 범위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다음의 도매 및 소매업에서는 1회용품 사용이 제한됩니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6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2항제1호, 「한국표준산업분류」 522면 및 564-565면 참조).

구분	형태
도매업	√ 판매하는 상품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소매업자에게 판매하는 도매업자와 산업체, 단체, 기관 및 전문 사용자 등에 상품을 공급해 주는 산업 공급자 및 수출·수입업자 및 고물 수집상 등
소매업	√ 종합 소매업: 일반대중을 대상으로 직접 판매할 수 있는 매장을 개설하고 식품 또는 비식품위주의 각종 상품을 종합적으로 소매하는 산업활동 √ 전문 소매업: 일반대중을 대상으로 직접 판매할 수 있는 매장을 개설하고 특정상품(특정 신상품 전문소매업과 특정 중고품 전문소매업 포함)을 전문적으로 소매하는 산업활동 √ 중고품 소매업: 중고 가구·가전제품·서적 등 각종의 중고 상품을 소매하는 산업활동 √ 무점포 소매업: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직접 판매할 수 있는 매장(점포)을 개설하지 않고 전자상거래 및 기타 통신 판매, 행사 형식에 따른 고객 유치 판매, 배달 및 방문 판매, 노점, 이동 판매, 자동판매기 및 기타 무점포 판매방법에 따라 각종의 특정 상품 또는 종합 상품을 소매하는 산업활동

※ 도·소매업의 분류기준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회용품 사용제한 예외 대상

▪ 1회용품의 사용이 제한되는 도·소매업에서 다음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제4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4항제3호·제4호 및 「1회용품 사용규제(무상제공금지 및 사용억제) 제외대상」 제1조).

√ 도·소매업의 매장 면적이 33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다만,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의 조례로 매장 면적 기준을 33제곱미터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해당 면적으로 함)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1회용품의 사용량, 1회용품 사용의 불가피성 등을 고려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려한 기준은 「1회용품 사용규제(무상제공금지 및 사용억제) 제외대상」 별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3.2. 1회용품 사용억제

1회용품 사용억제

종합 소매업의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사용억제

▪ "종합 소매업"이란 일반대중을 대상으로 직접 판매할 수 있는 매장을 개설하고 식품 또는 비식품 위주의 각종 상품을 종합적으로 소매하는 산업활동으로 편의점, 면세점 및 슈퍼마켓 등을 말합니다(「한국표준산업분류」 565면 참조).

▪ 위 종합 소매업에서는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사용이 억제됩니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별표 2 제6호 가목 비고 단서).

도·소매업의 1회용 광고물 및 선전물 사용억제

▪ 매장 면적이 33제곱미터를 넘는 도·소매업에서는 1회용 광고물 및 선전물의 제작·배포 등의 사용이 억제됩니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별표 2 제6호 나목).

Q. 고객에게 제공하지 않고 영업소에만 부착하는 광고선전물도 규제대상인가요?

A. 고객에게 제공하지 않고 영업장소에 부착하는 광고전단, 포스터, 스티커와 영업장 내에서 사용하는 제품 소개용 카탈로그 등의 홍보물과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되어 고객에게 제공하는 선전물은 제외됩니다(기후에너지환경부, 2023. 12,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적용범위 가이드라인』, 5면).

1회용품 사용억제 위반 시 제재

1회용품 사용억제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 1회용품 사용억제 대상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업종을 경영하는 사람이 이를 위반하여 1회용품을 사용한 때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제2항제3호).

※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대한 세부사항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3.3. 1회용품 무상제공 금지

도·소매업의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무상제공 금지 등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무상제공 금지

▪ 매장 면적이 33제곱미터가 넘는 도·소매업(종합소매업은 사용억제)에서는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을 무상으로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6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2항제1호, 제8조제4항제3호 본문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별표 2 제6호 가목 본문).

▪ 다만, 다음에 해당될 때에는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자는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별표 2 제6호 가목 단서 및 「1회용품 사용규제에서 제외되는 1회용 봉투·쇼핑백」 제1조제2호·제3호).

- 종이재질의 봉투 및 쇼핑백
- 생선, 정육 및 채소 등 음식료품의 겉면에 수분이 있는 제품이나 냉장고 등에 보관하는 제품으로서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는 제품을 담기 위한 합성수지재질의 봉투
- 1회용품 사용제한 대상에서 제외되는 다음의 봉투·쇼핑백
  - √ B5 규격(182mm×257mm) 또는 0.5ℓ(500㎤) 이하의 비닐 봉투·쇼핑백
  - √ 망사·박스 및 자루 형태로 제작된 봉투·쇼핑백
  - √ 이불, 장판 등 대형물품을 담을 수 있도록 제작된 50ℓ 이상의 봉투
  - √ 액체류보안봉투
  - √ 종이재질에 UV 코팅 이외의 방식으로 합성수지 등을 이용하여 단면 이하를 도포 또는 첩합하여 제조한 봉투 또는 쇼핑백(쇼핑백의 경우 외부 바닥면에 원지 종류, 표면처리 방식, 제조사명, 제조사 연락처 등을 명시한 경우를 말함)

> **Q. 1회용 봉투 유상제공 시 봉투가격을 가게 주인이 부담해도 되나요?**
>
> A. 무분별한 1회용 비닐봉투 사용에 따른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대규모점포 또는 도·소매업에서 1회용 봉투·쇼핑백의 경우,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봉투 가격을 손님이 아닌 가게 주인이 부담하는 것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맞지 않는 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
> <출처: 기후에너지환경부 홈페이지>

1회용품 무상제공금지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 1회용품 무상제공금지 대상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업종을 경영하는 사람이 이를 위반하여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한 때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제2항제3호).

> ※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대한 세부사항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회용 봉투·쇼핑백 판매대금의 용도

▪ 1회용 봉투·쇼핑백을 판매한 사업자는 판매대금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의2 및 별표 2 비고 제3호).

- 고객이 사용한 1회용 봉투·쇼핑백을 되가져올 경우의 현금환불
- 고객이 장바구니를 이용할 경우의 현금할인 또는 사은품 제공
- 장바구니의 제작·보급
- 1회용품의 사용억제를 위한 홍보
- 전년도의 1회용 봉투·쇼핑백 판매금액보다 고객에게 환불 또는 현금 할인한 금액이 많은 경우 그에 대한 보전
- 그 밖에 환경보전을 위한 다음의 활동
  - √ 1회용 합성수지 재질 제품의 생분해성수지제품으로의 대체(代替)
  - √ 1회용 봉투·쇼핑백의 회수·재활용 촉진
  - √ 환경미화원의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원
  - √ 민간 환경단체의 환경보전 활동 지원

> **Q. 고객이 사용한 1회용 봉투를 되가져 올 경우 환불해 주지 않으면 벌금을 내야 하나요?**
>
> A.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서는 1회용 봉투를 판매한 사업자는 고객이 사용한 1회용 봉투를 되가져 올 경우 판매대금을 현금환불, 현금할인, 장바구니의 제작·보급 용도로 사용토록 권장하고 있으나, 매장으로 하여금 현금으로 환불해 줄 것을 강제하지는 않습니다.
>
> <출처: 기후에너지환경부 홈페이지>

2.4. 목욕탕, 숙박업 및 체육시설 등

2.4.1. 목욕탕, 숙박업 및 체육시설 등의 범위

1회용품 무상제공이 금지되는 목욕장업, 숙박업 및 체육시설 등

1회용품 무상제공이 금지되는 목욕장업의 범위

- 목욕장업에서는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3호).
- “목욕장업”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손님에게 제공하는 영업을 말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 본문).
  - 물로 목욕을 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
  - 맥반석·황토·옥 등을 직접 또는 간접 가열하여 발생되는 열기 또는 원적외선 등을 이용하여 땀을 낼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
-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시설은 목욕장업에서 제외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 단서 및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 숙박업 영업소에 부설된 욕실
  - 종합체육시설업의 체온 관리실
  - 농어촌민박사업용 시설에 부설된 욕실

- 자연휴양림 안에 설치된 시설에 부설된 욕실
- 청소년 수련시설에 부설된 욕실
- 등록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용 시설 및 한옥체험업용 시설

1회용품 무상제공이 금지되는 숙박업의 범위

- 객실이 50실 이상인 숙박업에서는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3호).
- "숙박업"이란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본문).
-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시설은 숙박업에서 제외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단서 및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1항).
  - 농어촌민박사업용 시설
  - 자연휴양림 안에 설치된 시설
  - 청소년수련시설
  -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용 시설 및 한옥체험업용 시설

1회용품 무상제공이 금지되는 체육시설

- 체육시설에서는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5호).
- "체육시설"이란 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합니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그 밖의 1회용품 사용이 억제되는 업종

- 그 밖에 다음의 업종에서는 1회용품 사용이 억제됩니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6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2항제2호 및 「한국표준산업분류」 참조).

1회용품 무상제공 금지 업종	업종 세부내용
금융업	자금을 여·수신하는 활동을 수행하는 각종 은행 및 저축기관, 증권 발행 및 신탁 등으로 모집한 자금을 자기계정으로 유가증권 및 기타 금융자산에 투자하는 기관, 금융리스·개발금융·신용카드 및 할부금융 등을 수행하는 여신 전문 금융기관, 그 외 공공기금 관리·운용기관과 지주회사 등이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포함
보험 및 연금업	장·단기에 발생할 수 있는 생명 또는 사고의 위험을 분산시킬 목적으로 기금을 조성·관리하는 보험업과 노후 또는 퇴직 후의 소득 보장기금을 조성하여 관리하는 개인 및 단체 공제사업 또는 연금사업을 포함
증권 중개업	금융시장에서 증권 판매자 또는 매수자의 한편에 서서 증권을 중개하는 서비스 제공
선물 중개업	선물거래 방식에 따라 회원들과 예약된 미래 상품의 판매 또는 구매 중개
부동산 임대업	√ 자기 소유 또는 임차한 각종 부동산 임대 √ 주거용 건물 및 건물 일부를 임대 √ 사무, 상업 및 기타 비거주용 건물(점포, 사무실 포함)을 임대 √ 농업용 토지, 광물 채굴을 위한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을 임대
부동산 공급업	√ 직접적인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일괄도급하여 개발한 농장·택지·공업용지 등의 토지와 타인에게 도급을 주어 건설한 건물 등을 분양·판매 √ 구입한 부동산을 임대 또는 운영하지 않고 재판매하는 경우
광고 대행업	광고주를 대리하여 광고에 관련된 시장조사 및 광고기획, 광고물제작, 매체선택, 매체와의 광고계약, 광고물을 라디오, 텔레비전, 인터넷, 정기간행물, 신문 등의 광고매체에 광고하는 업무를 총괄적으로 대행하는 산업활동
교육 서비스업 중 기타 교육기관	√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교육기관 √ 예술학원 √ 외국어 학원 및 기타 교습학원 √ 사회교육시설 √ 직원훈련기관 √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 그 밖의 컴퓨터 학원 등
영화관 운영업	실내 또는 야외에서 영사시설을 갖추고 영화를 상영하는 산업활동
공연시설 운영업	극장, 음악당 및 기타 실연극을 공연하는 시설을 운영하면서 자체 제작한 오페라, 연극, 음악회 등을 공연하는 산업활동

2.4.2. 1회용품 사용억제

금융업, 영화관 운영업 및 체육시설 등의 1회용품 사용억제

금융업 및 영화관 운영업 등의 1회용 광고물·선전물 사용억제

▪ 금융업, 보험·연금업, 증권·선물 중개업, 부동산 임대·공급업, 광고 대행업, 교육 서비스업 중 기타 교육기관, 영화관 운영업 및 공연시설 운영업에서는 1회용 광고물·선전물을 제작·배포 등의 사용을 억제해야 합니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별표 2 제7호).

Q. 종이로 된 1회용 전단지도 사용억제 대상인가요?

A. 다음에 해당되는 전단지는 규제 대상에 해당하며, 합성수지로 도포되지 않은 종이 전단지는 사용이 가능합니다(출처: 기후에너지환경부, 2023. 12.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적용범위 가이드라인』, 27면).

- 종이에 합성수지를 분사하여 종이표면에 막을 형성시킨 것
- 합성수지필름을붙인 광고전단지로서 신문·잡지 등에 삽입하는 것
- 고객배포용 광고전단지 또는 카탈로그 등 단순 광고 목적의 1회용 광고선전물에 해당하는 것

체육시설의 1회용 응원용품 사용억제

▪ 체육시설에서 합성수지(플라스틱 제품 등)의 응원용품은 사용이 억제됩니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별표 2 제5호).

Q. 가수들이 체조경기장 등에서 콘서트를 할 때 관객들이 외부에서 굿즈로 구입한 응원봉의 사용도 금지되나요?

A. 관객이 외부에서 개별적으로 구입한 응원봉을 가지고 콘서트가 열리는 체육시설에서 사용하는 것은 규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출처: 기후에너지환경부, 2023. 12.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적용범위 가이드라인』, 25면).

Q. 체육시설에서 1회용품 플라스틱 응원용품에 해당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A.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및 「1회용품 사용규제관련 업무처리지침」에 체육관, 운동장, 종합체육시설 등에서 응원객, 관람객 등에게 제공하는 막대풍선, 비닐방석 등과 같은 플라스틱 응원용품은 규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응원용 배트와 같이 견고하게 제작되어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은 다회용품에 해당되므로 규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출처: 기후에너지환경부, 2023. 12.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적용범위 가이드라인』, 25면).

1회용품 사용억제 위반에 따른 제재

1회용품 사용억제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 1회용품 사용억제 대상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업종을 경영하는 사람이 이를 위반하여 1회용품을 사용한 때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제2항제3호).

※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대한 세부사항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4.3. 1회용품 무상제공 금지

목욕장업, 숙박업 및 체육시설의 1회용품 무상제공 금지

목욕장업의 1회용 면도기 등 무상제공 금지

▪ 목욕장업에서는 다음의 1회용품을 출입구·계산대 등에서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탈의실·욕실·객실 등에 비치해서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할 수 없습니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별표 2 제3호 및 「1회용품 사용규제관련 업무처리지침」 제4조제2호).

- 1회용 면도기
- 1회용 칫솔 및 치약
- 1회용 샴푸 및 린스

숙박업의 1회용 면도기 등 무상제공 금지

▪ 객실이 50실 이상인 숙박업에서는 다음의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별표 2 제3호 및 「1회용품 사용규제관련 업무처리지침」 제4조제2호).

- 1회용 면도기
- 1회용 칫솔 및 치약
- 1회용 샴푸 및 린스

체육시설의 1회용 응원용품 무상제공 금지

▪ 체육시설에서는 1회용 응원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별표 2 제5호).

1회용품 무상제공금지 위반 시 제재

1회용품 무상제공금지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 1회용품 무상제공금지 대상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업종을 경영하는 사람이 이를 위반하여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한 때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제2항제3호).

> ※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대한 세부사항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1회용품 분리배출 방법 알아보기

3.1. 1회용품 분리배출

3.1.1. 재활용 가능한 1회용품의 분리배출

재활용 가능한 1회용품의 분리배출

"재활용"이란?

▪ “재활용”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합니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및 「에너지법」 제2조제1호).

- 폐기물을 재사용·재생이용하거나 재사용·재생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
- 폐기물로부터 연료·열·전기 에너지를 회수하거나 회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거나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
  - √ 가연성 고형폐기물로부터 에너지를 회수하는 활동
  - √ 폐기물을 에너지를 회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
  - √ 폐기물(지정폐기물 제외)을 시멘트 소성로 등의 시설에서 연료로 사용하는 활동

> ※ 폐기물로부터 에너지를 회수 받는 세부기준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활용 가능한 1회용품의 분리배출 및 과태료

▪ 모든 국민은 폐기물을 최대한 쉽게 순환이용 할 수 있는 상태로 분리하여 배출하고,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력해야 합니다(「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7조제2항).

▪ 다음의 사항을 위반한 사람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됩니다(「폐기물관리법」 제68조제3항제3호 및 제15조제1항·제2항).

- 생활폐기물이 배출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관할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환경 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그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양을 줄여서 배출
- 생활폐기물이 배출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생활폐기물의 분리·보관에 필요한 보관시설을 설치하고,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종류별, 성질·상태별로 분리해서 보관

> ※ 분리배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역 조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1.2. 1회용품의 분리배출 방법

1회용품의 분리배출 방법

1회용 비닐봉투

▪ 1회용 비닐봉투의 분리배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제2항,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별표 1 제1호사목 및 『재활용품 분리배출 가이드라인』 10면).

구분	내용
해당품목	1회용 봉투 등 각종 비닐류  ※ 필름·시트형, 랩필름, 각 포장재의 표면적이 50㎠ 미만, 내용물의 용량이 30㎖ 또는 30g 이하인 포장재 등 분리배출 표시를 할 수 없는 포장재 포함
비해당품목	√ 깨끗하게 이물질 제거가 되지 않은 랩필름 등 √ 식탁보, 고무장갑, 장판, 돗자리, 섬유류 등(천막, 현수막, 의류 및 침구류 등)
배출방법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흩날리지 않도록 봉투에 담아 배출

1회용 플라스틱 컵 및 용기 등

▪ 1회용 플라스틱 컵의 분리배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별표 1 제1호바목 및 『재활용품 분리배출 가이드라인』 10면 참조).

구분	내용
해당품목	1회용 플라스틱 컵 
비해당품목	플라스틱 이외의 재질이 부착된 완구·문구류, 옷걸이, 칫솔, 파일철, 전화기, 낚싯대, 유모차·보행기 및 CD·DVD 등 ※ 종량제봉투, 특수규격마대 또는 대형폐기물 처리 등 지자체 조례에 따라 배출
배출방법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1회용 스티로폼 용기 등

▪ 1회용 스티로폼 용기 등의 분리배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별표 1 제1호아목 및 『재활용품 분리배출 가이드라인』 10면 참조).

구분	내용
해당품목	1회용 스티로폼 용기 등
비해당품목	√ 다른 재질과 코팅 또는 접착된 발포스티 √ 건축용 내·외장재 스티로폼 √ 이물질을 제거하기 어려운 경우 등
배출방법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부착상표 등 스티로폼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그 밖의 분리배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재활용품 분리배출 가이드라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